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227호
2. 발 의 자 : 허기회 의원
3. 발의일자 : 2017. 11. 6.
4. 회부일자 : 2017. 11. 7.

## II . 제안이유

- 최근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까지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 인식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음.

따라서 차별없는 진정한 선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부터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 바, 교육활동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Ⅲ. 주요내용

1.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(제3조)
2. 구체적인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제5조)
3. 개선교육의 실시(제7조)
4.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(제8조)

### 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2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(조례안 참고)
3. 기 타 :
  - 입법예고(2017. 11. 10. ~ 11. 17.) 결과 : 의견 없음.

## 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17년 11월 6일 허가회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227호로 발의되어 2017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(이하 '개선교육'이라 함)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 가. 개선교육 현황과 조례인의 제정 취지면에서의 검토

- 현행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학생, 공무원, 근로자,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<sup>1)</sup>
- 이에 따라 교육청도 매년 [표1] 장애이해교육과 [표2] 장애인식개선 예술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1) 「장애인복지법」

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, 공무원, 근로자,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·「초·중등교육법」·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·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 등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3항의 사업,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,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표1]2017년 장애이해교육 실시 현황

참여실적 \ 교육방법		대한민국 1교시 참여	비바 양상블 시청	장애체험 활동 참여	교내·외 강사 활용 강의	제3회 대한민국 어울림축전 등 장애이해 문화예술행사 참여	기타 (시설 방문 등)
유치원	유치원 수	120	3	248	476	2	104
	학생 수	12,002	218	20,497	51,829	191	10,503
초등학교	학교 수	567	8	176	574	40	158
	학생 수	398,440	1,786	40,489	219,642	14,356	78,994
중학교	학교 수	7	237	82	323	71	119
	학생 수	3,609	125,816	16,743	154,138	6,294	59,890
고등학교	학교 수	7	149	56	232	9	104
	학생 수	5,076	107,474	11,925	151,019	3,115	47,297
계	학교 수	701	396	562	1,604	122	485
	학생 수	419,127	234,969	89,654	576,458	23,956	196,684

[표2]2014~2017년 장애인식개선 예술 공연 실시 현황

공연명 \ 연도	장애인식개선 순회음악회	장애인식개선 예술 공연	2017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(장애인식개선 예술 공연)
2014	초·중·고 23교	교육지원청 3기관	·
2015	초·중·고 25교	교육지원청 3기관	·
2016	·	초·중·고 54교	·
2017	·	·	초·중·고 30교

○ 동 조례안은 현재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개선교육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보다 성숙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려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그 취지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.

**나.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구성체계**

○ 동 조례안은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예방

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교육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, 정의, 교육감의 책무와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, 안 제5조는 교육감에게 체계적인 개선교육 활동을 위해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, 개선교육 담당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, 개선교육 교재 개발,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이러한 시행계획의 기초자료로서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개선교육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그리고 안 제7조는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, 안 제8조는 이러한 개선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안 제9조에서 교육감에게 개선교육의 실시 여부, 운영실태 등에 대한 지도·감독권을 명시하였습니다.

- 동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「장애인복지법」 등의 상위법령과 「자치법규 입안실무」 및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참고로 교육청도은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식 개선사업에 합치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안 제5조제2항제3호의 담당교사 지정은 학교의 자율성에 맡길 수 있도록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(학생생활교육과-21293, 2017.11.14).

그러나 안 제5조제2항제3호는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담당교사 지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계획 수립시에 교육청에서 별도로 논의하여 각급 학교별로 자율적으로

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므로 조례 제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 
사료됩니다.

- **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  
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

# 관계 법령

## 장애인복지법

[시행 2017.9.19.] [법률 제14892호, 2017.9.19., 일부개정]

-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, 공무원, 근로자,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·「초·중등교육법」·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·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제3항의 사업,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,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장애인복지법 시행령

[시행 2017.8.9.] [대통령령 제28207호, 2017.7.24., 일부개정]

- 제16조(장애 인식개선 교육)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  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  3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
-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·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(이하 "장애 인식개선 교육"이라 한다)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장애의 정의
  2.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
  3.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
  4.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
  5.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
  6.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
- ④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,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- 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, 방법,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제32조(괴롭힘 등의 금지) ① 장애인은 성별, 연령, 장애의 유형 및 정도,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.

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, 법률구조,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,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, 시설, 직장,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, 가정, 시설, 직장,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, 학대,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, 희롱,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33조(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·출산·양육·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,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
2.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
3.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

④ 교육기관, 사업장,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,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.

1.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
2.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
3.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
4.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

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(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,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



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5조(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) ①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, 훈련, 건강보호서비스, 재활서비스, 취업준비,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, 학대, 착취, 감금,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.

제36조(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, 장애의 유형 및 정도,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37조(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)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, 홍보 등 필요한 법적·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